

	<h1>당직근무에 관한 규정</h1>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7. 11. 01.
		최종개정일자	2022. 04. 01
		담당부서	행정지원처

#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대학의 당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휴무일에 대학을 대표하여 대학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긴급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# 제2조(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당직근무 : 일직 및 숙직근무를 총칭하며 각 부서의 과장급 이하의 직원과 부서 및 학과의 조교가 당직근무를 한다.
2. 일직근무 : 휴일 주간에 대학을 대표하여 정해진 시간 중 근무
3. 숙직근무 :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익일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의 근무
4. 휴일 :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및 기타 대학이 정하는 휴일

### 제3조(근무시간)

1. 일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.
2.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익일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.

### 제4조(당직자의 임무)

1. 대학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필요한 조치
2.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과 사고발생시 사후조치
3. 돌발사태 및 비상사태 처리와 그 예방에 관한 사항
4. 민원전화 접수 및 처리
5.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별도로 지시된 사항

### 제5조(당직의 통보)

1. 당직통보는 당직명령부에 의하여 본인에게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통보 한다.
2. 일직근무는 직원 및 조교에 대하여 순번<별표1>을 정하며, 숙직근무는 야간경비로 명하여 윤번제로 편성한다.

### **제6조(당직근무자 대체)**

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, 휴가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을 받은 자가 지체 없이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게 하여야 한다.

### **제7조(당직의 면제)**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.

1. 비서담당직원, 운전담당직원 및 시설정비직원
2. 휴직, 휴가, 출장, 기타 정당한 사유로서 출근하지 못하는 자
3. 각 부서의 과장급 이상자
4. 수습근무중인 자
5. 일시적 및 일급제 고용자

### **제8조(당직비)**

일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**제9조(준수사항)**

1. 당직자는 출근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사고 등 비상사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급자 또는 책임자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
3. 당직일지 작성 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한다.

### 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〈별표1〉 삭제

■ 일직근무 순번(윤번제로 시행)

행정지원처(오석준, 최재원, 설경란, 김태호)

⇒ 부서 조교(학사지원처 → 정보관리소 → 산학취업처 → 도서관)

⇒ 학사지원처(오현, 유종혁, 최희정, 최문경)

⇒ 입학학생처(김형아, 유행규, 이영훈)

⇒ 학과 조교(물리치료과 → 치위생과 → 간호학과 → 치기공과 → 방사선과)

⇒ 기획처(최현종, 방인후, 주석환, 김송희)

⇒ 정보관리소(이창현, 이상욱)

⇒ 산학취업처(김형수, 김정우, 정재우)

⇒ 교수학습지원센터(조현준)

⇒ 학과 조교(임상병리과 → 보건행정과 → 호텔조리영양과 → 뷰티미용과 → 자동차과

→ 건축요트디자인과)

⇒ 건강증진센터(이보미)

⇒ 학생상담센터(윤은아)

⇒ 도서관(박형준)

⇒ NCS지원센터(이민옥)

⇒ 학과 조교(토목조경과 → 전기과 → 사회복지과 → 유아교육과 → 웰빙복지융합과 →  
운동건강과 → 실용음악과)

※ 부서의 신설은 순번의 마지막 부서의 다음부서로 순서를 정하며, 부서 및 학과의 당  
직자가 휴직, 사직, 미 임용 등 공석이 발생하면 다음 순번자를 당직자로 정함.

※ 발령에 따른 근무순서의 변동은 부서의 순서에 따른다.

※ 당직명령부 결재 후 국가 임시공휴일 지정 및 대학자체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휴일이 발생하면 다음 순번자를 당직자로 정함.